

인천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606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변론 종결 2020. 4. 14.

판결 선고 2020. 5. 19.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가소538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사업자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6. 12. 7. 22: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매장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유무 및 과실비율 등에 있어 의견이 대립되자 2018. 4. 12.경 H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7.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과실내용 등에 관하여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르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7. 26.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위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합계 723,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 차량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723,21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H위원회의 심의사건 및 이 사건 소장에서는 '편도 3차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직진차로인 2차로 에서 1차로로 급작스럽게 차로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9.3.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이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가던 중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전방의 두 번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서히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이 뒤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② 원고가 2019. 3.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특정한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일 차선에서 선행, 후행 관계였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할 경우 적어도원고 차량의 뒷범퍼 일부라도 그 충격범위에 포함됨이 통상적임에도 원고 차량의 충격부위는 차량 우측 뒷바퀴 측면 부위여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를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는 2020. 3.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차량이 정차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진로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사고 경위는 동일 차로에서 원 · 피고 차량이 선행, 후행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전제로 할 때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H위원회의 심의사건 당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주행하고, 피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피고 차량은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은 채 사고 지점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현장사진과 당시 예상되는 차량의 진행 상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임진수, 판사 신정수